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양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붙임 보고서 참조

붙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끝 .

【 5 】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10. 3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재정이유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50년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바탕위에 국가와 사회개혁을 통하여
-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제2조)

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규정함. (안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의회부의장과 부군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함. (안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소집·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제5조, 제6조)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행정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규정함. (안제7조)

바.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등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제9조, 제10조)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부의장
2. 부군수와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5인 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 제정이유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50년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바탕위에 국가와 사회개혁을 통하여
-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제2조).
- 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규정함.(안제3조).
-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의회부의장과 부군수,교육청 학무과장,경찰서 경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함.(안제4조).
- 라.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소집·운영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제5조, 제6조)
-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행정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규정함 (안제7조).
- 바.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등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9조,제10조).

# 資 料

<자료 1>

○○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1. 시(군)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시장·부군수와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국(과)장이, 서기는 ○○과(계)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1998. 10. 1 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제1조(목적)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의 방향 및 의제설정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의제·활동 및 홍보 관련사항에 대한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의 건국을 위한 관련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대표공동위원장 1인 및 공동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한 5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공동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대표공동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대통령이 지정한 직위에 재직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지정한 직위에 재직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⑤위원회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대표공동위원장의 직무) ①대표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대표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대표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상임위원회) ①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4-

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사회 각 분야별로 지명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7조(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 ①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부의되는 과제의 기획·심의
2. 개혁논리 및 중장기 개혁방향에 대한 기획·조정
3. 의식·제도 및 생활개혁 전반에 관한 기획
4. 국정개혁의 홍보방안 연구
5.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된 실천계획의 개발 및 제시
6. 기타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비서관이 된다.

④기획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기획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지원과 추진상황의 확인
4. 기타 대표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무기구에 위임하는 사항

제9조(부처추진반) 각 부처에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의 주도적 실천과 개혁의 자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반을 둔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기획단의 기획위원, 전문위원 기타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세칙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위원회 운영

제2조(구성) ①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직위를 지정한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위원
2. 국무조정실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3. 법제처장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5. 기획예산위원회 · 여성특별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
6. 노사정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정책평가위원회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

② 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대표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2인이상의 공동위원장 및 20인이상의 위원이 발의하는 때에는 대표공동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표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5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대표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2인이상, 간사 또는 위원 10인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소관분야의 업무중 국정개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상임위원회의 운영

제7조(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공동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5인이상의 상임위원이 발의한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제와 관련된 위원단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상임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⑤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의안은 상임위원장, 간사 또는 상임위원 10인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제9조(회의록) 상임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 4 장 기획단의 운영

제10조(회의) 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회의는 대표공동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3인이상의 기획위원이 발의하는 때 단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제와 관련된 기획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기획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단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⑤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기획단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실장이 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의안은 단장, 간사 또는 기획위원 5인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제13조(회의록) 기획단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4조(구성) ① 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전문위원) ① 분과위원회에 약간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

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소속을 정하여 상임위원장 및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 6 장 사무기구

제16조(기획운영실)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운영실을 둔다.

제17조(직무) 기획운영실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부, 심의결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의 서무·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제작·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공동위원장·상임위원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운영실에 위임하는 사항

제18조(사무직원) ① 기획운영실에 28인이내의 사무직원을 두되, 관

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자와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대표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직원과는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연구보조요원, 속기사, 번역사, 운전원 등 필요한 실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정부부처와의 업무협조) 기획운영실장은 각 부처에 설치된 자체 추진반에 대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안전제출, 조사·연구,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의 제출 등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7 장 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제20조(대통령 보고) 대표공동위원장은 규정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중앙부처) 각 부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중에서 소관부처와 관련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지방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8 장 보 칙

제23조(위임)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지급기준) 공동위원장, 상임위원장, 단장, 위원, 기타 위원회소속 공무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대표공동위원장이 정하고, 예산·지출에 관한 업무는 기획운영실장이 수행한다.

제25조(공무원 인사) 기획운영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파견요청·해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공동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실장이 수행한다.

## 부 칙

이 운영세칙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